

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	 페이스북 @kcanews	
		 인스타그램 @kca.go.kr	
이 자료는 3월 11일(금) 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	2022년 3월 10일(목) (총 8쪽)	담당부서	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
		담당자	김선희 팀장 (043-880-5831) 이태은 대리 (051-638-0733)

도심공원 내 CCTV, 효율적 설치·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
 - 공원 이용자의 76.8%는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 -

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,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이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(20개)의 CCTV 설치·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했다.

* 공공 CCTV : ('17년) 954,261대 → ('18년) 1,032,879대 → ('19년) 1,148,770대 → ('20년) 1,336,653대

도심공원 이용자(500명)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92.6%(463명)는 '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'고 인식하고 있었고, 76.8%(384명)는 '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.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(36.5%)가 가장 많았고, 화장실 인근(31.3%), 휴식공간(13.0%), 주차장(8.6%) 순이었다.

□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

현행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공원녹지법」)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조사대상 공원(20개)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0,000m²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.3대에서 최대 6.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,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 지침*에는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,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했다.

* 「공원녹지법」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'도시공원·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'

[공원 출입구 CCTV 설치 현황]

(단위 : 개, %)

구분	모든 출입구 설치	일부 설치	미설치	계
공원 수	3	13	4	20
(비율)	(15.0)	(65.0)	(20.0)	(100.0)

공원의 CCTV 세부 위치별*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(15.0%)이었고,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(21.4%), 화장실 인근(27.8%), 다리 부근(40.0%) 등이었다.

*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'설치'로 간주함.

□ **공원 내 설치된 CCTV의 70.7%가 고정형**

공원 내 설치된 CCTV(651대)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, 대다수인 70.7%가 고정형 이었고, 회전형은 29.3%에 불과했다.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(285개소)의 57.5%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, 여러 방향 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*를 설치한 곳은 42.5%였다.

* 복합형 CCTV :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수의 고정형 CCTV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운영하거나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

[공원 내 설치된 CCTV 이미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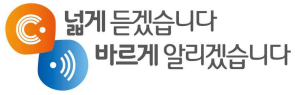


□ **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확충 및 CCTV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**

현재 「공원녹지법」에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점검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.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(공원관리청)에 ▲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 확보 및 촬영범위가 넓은 형태의 CCTV 확대, ▲ 비상벨 확충 및 점검, ▲ CCTV 촬영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1 CCTV 일반 현황

- **(개념)**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).
- **(유형)** CCTV는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회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.
 - 고정형은 관측 위치·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, 회전형은 일정 시간 간격마다 방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임.
- **(현황)** 공공 CCTV 운영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대다수(95.7%)의 CCTV가 범죄·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용도로 설치되고 있음.

[공공 CCTV 설치 현황¹⁾]

(단위 : 대, %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총 CCTV 설치 대수	954,261	1,032,879	1,148,770	1,336,653
전년 대비 증가 대수	109,125	78,618	115,891	187,883
전년 대비 증감비	(12.9)	(8.2)	(11.2)	(16.4)
설치 용도				
범죄예방	459,435	510,245	592,286	704,134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	443,542	469,742	503,148	575,146
교통단속	29,690	30,345	33,417	41,745
교통정보수집분석 및 제공	21,594	22,547	19,919	15,628

- **(비상벨)** 위급상황 발생 시 CCTV 비상벨을 누르면 각 군·구 CCTV 통합관제 센터로 연결되어 센터 직원 및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 -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됨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공원녹지법) 제 19조의 2, 2017.10. 개정).
- **(안내판)** CCTV를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·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).

1) 공공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CCTV(‘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’, e-나라지표, 2021. 12. 7. 기준)

□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

-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함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함(「공원녹지법」 제 19조의 2).
-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함)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·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함(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 제 15의 2).
-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·설치·관리하여야 함.
 - (12)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,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함.
 - (13)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함 (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-4-2).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

-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해서는 안 됨.
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,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3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 25조 ①).
-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·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 25조 ③).

조사 개요

□ 설문조사

- (조사대상) 최근 1년 이내 도심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 500명
- (조사내용) 도심공원 내 방범용 공공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
- (조사기간 및 방식) 2021.10.5. ~ 10.20., 온라인 설문조사

□ 현장조사

- (조사대상)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 20개(서울 10개, 경기·인천 10개)
- (조사내용) 도심공원 내 방범용 공공 CCTV 설치·관리 실태
- (조사기간) 2021.10. ~ 12.

1. 설문조사

- (CCTV 추가 설치) 조사대상자(500명)의 76.8%(384명)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함.
 -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(384명)는 'CCTV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'(46.1%)와 'CCTV가 설치된 곳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'(22.9%)이 다수(69.0%)였음.

[공원 내 CCTV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]

(단위 : 명, %)

CCTV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	설치된 곳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	범죄 수사에 도움 되므로	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해	시설물 관리를 위해	계
177	88	57	55	7	384
(46.1)	(22.9)	(14.8)	(14.3)	(1.8)	(100.0)

- 추가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소(384명)로는 산책로가 36.5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화장실 인근(31.3%), 휴식장소(13.0%), 주차장(8.6%) 순이었음.

[공원 내 CCTV 추가설치 필요 장소]

(단위 : 명, %)

산책로	화장실 인근	휴식장소 (광장, 정자 등)	주차장	공원 출입구	시설물 (운동기구 등)	계
140	120	50	33	32	9	384
(36.5)	(31.3)	(13.0)	(8.6)	(8.3)	(2.3)	(100.0)

- (범죄 예방효과) 조사대상자(500명)의 92.6%(463명)는 공원에 방범용 공공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.
- (사생활 침해 우려) CCTV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'걱정된다'는 응답이 35.4%로서 '걱정되지 않는다'(30.4%)보다 많았음.

2. 현장조사

- (CCTV 설치 대수) 조사대상 20개 공원의 CCTV 설치 대수는 총 651대이고, 공원별 면적 10,000m²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.3대에서 최대 6.6대(평균 0.8대)로 큰 차이가 있었음.

[공원 내 CCTV 설치 현황(평균)]

공원면적	설치 구역	설치 대수	CCTV 1대당 공원면적	10,000m ² 당 CCTV 대수
383,021.9m ²	14.3개소	32.6대	11,829.5m ²	0.8대

- (CCTV 설치 위치)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구의 경우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하였고, 4개 공원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.

[공원 출입구 CCTV 설치 현황]

(단위 : 개, %)

구분	모든 출입구 설치	일부 설치	미설치	계
공원 수	3	13	4	20
(비율)	(15.0)	(65.0)	(20.0)	(100.0)

- 공원 내부의 세부 위치별 CCTV 설치 비율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이 15.0%로 가장 낮았고,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(21.4%), 화장실 인근(27.8%), 다리 부근(40.0%) 순이었음.

[공원 내 세부 위치별 CCTV 설치 현황]

(단위 : 개, %)

세부 위치	공원 수					
	설치		미설치		계	
보행로·자전거도로	17	(85.0)	3	(15.0)	20	(100.0)
무대·광장	13	(65.0)	7	(35.0)	20	(100.0)
주차장	10	(55.6)	8	(44.4)	18	(100.0)
놀이시설(그네, 미끄럼틀 등)	7	(50.0)	7	(50.0)	14	(100.0)
운동시설(아외운동기구, 테니스장 등)	9	(45.0)	11	(55.0)	20	(100.0)
다리 부근	6	(40.0)	9	(60.0)	15	(100.0)
화장실 인근	5	(27.8)	13	(72.2)	18	(100.0)
수변 산책로	3	(21.4)	11	(78.6)	14	(100.0)
휴식공간(잔디밭 등)	3	(15.0)	17	(85.0)	20	(100.0)

* 공원 내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'설치'로 간주함.

- (CCTV 형태) 설치된 CCTV(651대)의 형태를 살펴보면 촬영 위치가 고정된 고정형*이 70.7%(460대)로 다수였고, 일정 시간마다 방향을 바꿔 촬영할 수 있는 회전형은 29.3%(191대)였음.

* 반고정형(103개 포함), 회전형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 '반고정형'으로 분류

- CCTV가 설치된 구역(285개소) 중 고정형이나 회전형 등 단일 유형이 설치된 곳은 57.5%(164개소), 다수의 고정형 또는 고정형-회전형 등 촬영범위가 넓은 복합형이 설치된 곳은 42.5%(121개소)였음.

[공원 내 설치된 CCTV 이미지]



- **(비상벨)** 조사대상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,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이마저도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음.

[공원 내 CCTV 비상벨 설치 현황]

(단위 : 개, %)

구분	설치	미설치	계
공원 수	14	6	20
(비율)	(70.0)	(30.0)	(100.0)

- **(장애물)** 조사대상 20개 공원 중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에 가려져 있는 등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하였음.
- **(안내판)** 조사대상 20개 공원 모두 CCTV 촬영 목적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고지하는 안내판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으나, 이 중 4개 공원의 안내판은 글자가 흐릿하여 정보 확인이 어려웠음.